KOSHA GUIDE E - 87 - 2011

정전도장기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

2011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ㅇ 작성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충희

ㅇ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박영규

ㅇ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시스템연구실

- 제·개정 경과
  - 1994년 11월 전기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  - 1994년 12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
  - 2009년 6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  - 2009년 8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
  - 2011년 12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ㅇ 관련규격 및 자료
  - KOSHA GUIDE E-89-2011 (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)
  - KOSHA GUIDE E-47-2010 (가스폭발위험장소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)
  - KOSHA GUIDE E-99-2011 (분진폭발위험장소 설정에 관한 기술지침)
  - Spray application using flammable or combustible materials, NFPA 33, 2003
  - 미국 FM 기준 [Loss prevention data 8-27 (1977)]
- o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  -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제2편 제3장(전기로 인한 위험방지)
- ㅇ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ㅇ 공표일자 : 2011년 12월 29일

ㅇ 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E - 87 - 2011

# 정전도장기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

# 제 1 장 일반 사항

## 1. 목 적

이 지침은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325조에 따라, 정전기를 이용한 도장설비(이하 "정전도장기"라 한다)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액체도료 또는 분체도료를 사용하는 정전 도장기에 대하여 적용한다.

#### 3. 정 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공기분무방식"이란 분무기에 도료와 공기를 주입하여 도료를 미립화하는 방식을 말한다.
  - (나) "회전분무방식"이란 원판 또는 컵을 고속으로 회전시키고, 여기에 원심력으로 공급된 도료를 방출시켜 미립화 하는 방식을 말한다.
  - (다) "액압분무방식"이란 도료에 압력을 가하여 분무기의 미세한 구멍으로 도료를 분출시켜 미립화하는 방식을 말한다.
  - (라) "도료절연대"란 도전성 도료를 사용하여 정전도장을 할 때 도전성 회로가 구성되지 아니 하도록 도료 공급장치와 대지 간을 전기적으로 절연시킨 구조물을 말한다.

E - 87 - 2011

- (마) "주행도장장치"란 도장기가 왕복운동하면서 분무 도장하는 자동도장장치를 말한다.
- (바) "접지스위치"란 정전도장기의 고압 전원을 차단할 때 고압 케이블이 접지되도 록 하여 잔류전하를 방전시키는 스위치를 말한다.
- (사) "폭발방산구"란 구조물 내부의 폭발로 인한 압력 상승 시 내부 압력을 외부로 안전하게 분출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문, 창문, 판넬 등을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 2 장 정전도장기의 제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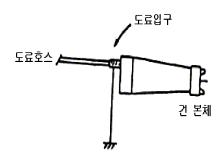
## 4. 정전도장기의 구조

#### 4.1 도장 건(Gun)

- (1) 액체정전도장기의 도장 건 구조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정전도장 작업 중 피도장물 또는 인체 등의 접지체가 건에 접근 또는 접촉하는 경우, 고전압 방전으로 인하여 분무도료를 착화시키거나 작업자가 감전되지 않도록 건 내부에 고저항을 갖게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제어회로로 구성하고, 전극의 정전용량은 착화나 전격 가능한 에너지 이상이 축적되지 않아야 한다.
  - (나) 건 본체는 용제, 충격, 압력 등에 견디고 충분한 절연내력을 가져야 한다.
  - (다) 고압계통은 케이블 단선 등으로 인한 지락사고 시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.
  - (라) 고압케이블이 건에 삽입되는 부분은 굴곡 작용으로 인하여 피로가 집중되지 않도록 완충장치 등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## E - 87 - 2011

- (마) 수동 건의 손잡이 부분은 접지 가능한 구조이고 도장 작업 중에 작업자가 손 잡이 부분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(바) 수동 건의 손잡이에는 조작스위치를 부착하여야 한다.
- (사) 건은 사용하는 압력공기 및 도료의 압력에 충분히 견디어야 한다.
- (아) 자동 건은 <그림 1>과 같이 건의 도료입구 금속부분이 접지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도전성 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(자) 액압분무형 정전 건에는 사용유체의 최고 압력을 명시하여야 한다.
- (차) 분사기 본체의 표면온도는 66 ℃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2) 분체정전도장기의 도장 건에 대하여는 상기 (1)의 (가)부터 (바)까지에 따른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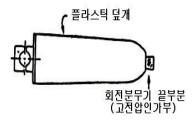
<그림 1> 자동 건의 도료 입구의 접지 예

#### 4.2 회전분무형 액체정전도장기

- (1) 절연재는 용제에 견디고 충분한 절연내력을 가져야 한다.
- (2) 고속회전 시에 분무장치 끝단 이외에는 진동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(3) 회전부분에는 필요시 회전운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가 있어야 한다.
- (4) 접지된 물체가 위험범위 내로 접근 시에는 전원이 자동 차단되는 기능을 갖추어 야 한다.
- (5) 도료 분무 시에만 고전압이 인가되는 구조이어야 한다. 다만, 고전압 인가상태를 점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E - 87 - 201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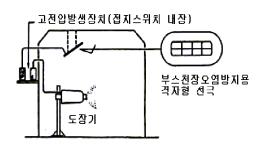
- (6) 고전압 인가부는 <그림 2>와 같이 분무기 끝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고정식 덮개로 덮여야 하며, 그 덮개에는 용제증기가 빠질 수 있는 배출부가 있어야 한다.
- (7) 압축공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조한 공기를 공급하거나, 응축수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(8) 자동도장기의 분무기 끝은 회전 시에만 도료가 분무되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(9) 자동도장기에는 자동세정기능을 갖도록 하여 작업자의 참여도를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

<그림 2> 회전분무형 액체정전도장기의 덮개

#### 4.3 외부전극이 부착된 액체정전도장기

(1) 천장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고전압 발생장치는 <그림 3>과 같이 도장기용과 별도로 설치하고, 해당 회로에 고전압 접지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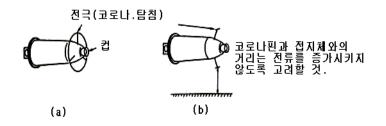


<그림 3> 천장의 오염방지용과 도장기의 고전압 발생장치

(2) 분무방식 변환형 전극이 부착된 <그림 4>의 외부전극 부착 액체도장기는 고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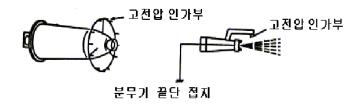
E - 87 - 2011

압회로의 전류가 감전이나 착화에너지 이하가 되도록 하되, 과전류 검출감도를 저하시키지 아니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.



<그림 4> 외부 전극부착 액체도장기의 구조

(3) 수용성 도료를 사용하는 외부 전극부착 액체도장기의 분무기 끝단은 <그림 5> 와 같이 접지시켜야 하고, 분무된 도료입자에 점화가 우려되는 도장기에는 불꽃 방전 억제기구를 갖추어야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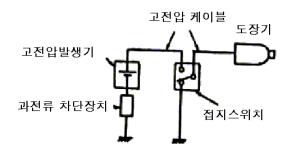
<그림 5> 수용성 도료용 외부 전극부착 액체도장기의 구조

## 4.4 전기 장치

- 4.4.1 액체나 분체정전도장기의 고정식 고전압 발생장치
  - (1) 고전압 발생장치에는 접지용 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.
  - (2) 1차측 전압의 변동률이 ± 10 % 이내에서 출력전압이 안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.
  - (3) 1차측 전원회로에 퓨즈, 차단기 등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
#### E - 87 - 2011

(4) 과전류 검출 및 고전압 전원의 차단기능이 있는 과전류 차단장치를 <그림 6>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.



<그림 6> 과전류 차단장치의 설치

- (5) 고전압 발생유무를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6) 전원 표시등 및 과전류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7) 고전압 발생장치의 전류 표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.
- (8) 먼지나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구조이어야 한다.
- (9) 회전분무형 도장기의 고전압 발생장치에는 고속 접지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10) 도장기에 설치된 고전압 발생장치는 도장기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, 이를 분기하여 2대 이상의 도장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(11) 고전압 발생장치와 케이블 사이에 완충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12) 사용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.
- 4.4.2 정전도장기의 내장식 고전압 발생장치
  - (1) 액체정전도장기의 내장식 고전압 발생장치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.

#### E - 87 - 2011

- (가) 내장된 고전압 발생장치는 내용제성 및 절연내력이 충분한 재료로 피복되어야 한다.
- (나) 내장식 고전압 발생장치는 접지되어야 한다.
- (다) 도장기에는 도료분무 시에만 고전압이 인가되도록 한다. 다만, 전압측정 또는 점검 시에는 예외로 한다.
- (라) 공기분무방식 또는 액압분무방식 도장기에는 과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고저항 기를 설치한다. 다만, 이와 동등 이상의 안전성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(마) 회전 분무형 도장기에는 비정상 시에 잔류전하를 방출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.
- (2) 분체정전도장기의 내장식 고전압 발생장치는 상기 (1)의 (가) 및 (나)에 적합하여 야 한다.

#### 4.4.3 액체나 분체정전도장기의 고압 케이블

- (1) 케이블은 최대 사용전압의 1.5배 이상의 절연내력을 가져야 한다.
- (2) 케이블은 충분한 내용제성이 있어야 한다.
- (3) 수동식 도장기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접지단자가 부착되어야 한다.
- (4) 접지단자는 케이블 장착 시에 자동으로 접지되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(5) 케이블 설치시의 곡률반경은 제작사에서 지정하는 규정값 이상이어야 한다.

#### 4.4.4 액체나 분체정전도장기의 과전류 검출장치

- (1) 고전압 발생장치의 전류가 규정값을 넘는 경우에는 회로를 즉시 차단하고 경보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.
- (2) 과전류 검출장치에는 과전압도 검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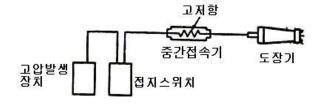
E - 87 - 2011

## 4.4.5 액체나 분체정전도장기의 접지스위치

- (1) 접지스위치는 전원 개폐 시 과전류가 흐르거나 노이즈 등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(2) 접지스위치의 개폐 시에 발생하는 정전유도 및 방전에 의하여 주변물질을 점화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3) 전원 차단 시 스위치의 부하측 회로가 자동으로 접지되는 구조이어야 한다.

#### 4.4.6 액체나 분체정전도장기의 고전압 접속기

- (1) 고전압 접속기는 최대사용전압의 1.5배 이상의 절연내력을 가져야 한다.
- (2) 접속기는 확실하게 접속되고 쉽게 분리시킬 수 있어야 하며, 접촉 불량으로 인한 발열이 없어야 한다.
- (3) 케이블 저항이 삽입된 <그림 7>과 같은 중간접속기는 방열이 잘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

<그림 7> 고전압 케이블의 중간접속기

#### 4.5 그 밖의 설비

## 4.5.1 액체정전도장기의 도료탱크 및 펌프 등

(1) 공기이송식 가압 탱크에는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
#### E - 87 - 2011

- (2) 탱크, 펌프 등의 금속부분은 모두 접지시켜야 한다.
- (3) 고정식 탱크 주변에는 용제증기를 제거하기 위한 배기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.
- (4) 전기기기는 해당 폭발위험장소에 적합한 방폭구조이어야 한다.
- (5) 이동식 도료공급장치는 이동용 대차가 도전성 차륜 등을 통하여 접지되는 구조 이어야 한다.

#### 4.5.2 액체정전도장기의 도료·용제 등의 배관

- (1) 배관은 도료·용제 등에 대하여 충분한 내용제성, 내구성 및 내압성이 있어야 한다.
- (2) 필요한 경우, 접지선 또는 도전성 재료를 이용하여 접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. 다만, 외경 40 mm 이하인 배관의 경우에는 도료 누설 시에도 배관의 대전으로 인한 점화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도 된다.
- (3) 접지되지 아니 한 도전성 도료 이송계통은 충분한 절연내력이 있는 배관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4) 절연배관 중간에 금속재질의 접속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지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(5) 배관을 지지할 때에는 기기 등의 마찰 등으로 인한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#### 4.5.3 액체정전도장기의 도료 순환장치

- (1) 같은 도료를 여러 도장기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설비에는 도장부스 밖에 도료 순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도료탱크, 용제탱크 등은 밀폐형으로 하되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.

#### E - 87 - 2011

- (3) 도료탱크는 액면제어를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4) 도료순환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충분한 내용제성 및 내압성을 가져야 한다.
- (5) 도료순환장치로부터 도료가 누설되지 않도록 접속부 등은 기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.
- (6) 탱크 및 펌프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 배관 등의 금속부분을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(7) 탱크에 도료를 주입하는 배관은 도료 주입 시 정전기 대전방지를 위하여 하부 주입방식으로 하여야 한다.
- (8) 도료 배관내의 유속은 정전기 대전방지를 위하여 1 m/sec 이하이어야 한다.
- (9) 이상 시에는 도료분무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.

#### 4.5.4 색절환장치

- (1) 액체정전도장기의 색절환장치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.
  - (가) 색절환 밸브는 원칙적으로 공압식으로 하되, 전동밸브를 폭발위험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방폭구조로 하여야 한다.
  - (나) 사용기기는 모두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
  - (다) 색절환장치가 작동 중에는 고전압이 차단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.
  - (라) 세정용 공기배관은 세정용 용제가 역류되지 않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.
  - (마) 색절환장치 및 세정장치의 배출구 및 그 부근은 대전되기 쉬운 배출배관을 확실히 고정하고 배출구는 착화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.
  - (바) 색절환 및 세정작업 시에 공압 조작을 하는 경우에는 배기구로부터 대전된 용제 미 스트가 방출될 수 있으므로 착화될 위험이 없는 장소에 배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.
  - (사) 도전성 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출배관을 세정할 수 있어야 하고, 고전압 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.

E - 87 - 201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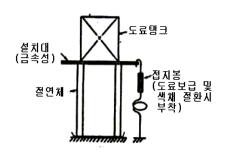
(2) 분체정전도장기의 색절환장치는 상기 (1)의 (가)부터 (다)까지에 따른다.

## 4.5.5 액체정전도장기의 도료 가온장치

- (1) 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되는 전기식 도료 가온장치는 해당 장소에 적합한 방폭구조 이어야 한다.
- (2) 이상 고온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온도조절기가 전열기의 전원을 자동차단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.
- (3) 사용되는 도료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

## 4.5.6 액체정전도장기의 도료 절연대

(1) 도전성의 금속성 도료 및 습식 도료의 사용으로 인하여 도료계통에 고전압이 인 가되지 아니하도록 도료경로를 절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<그림 8>과 같이 도 료탱크에 절연대를 설치하여야 한다.



<그림 8> 도료 절연대 및 접지봉

- (2) 도장기는 최대사용전압의 1.5배 이상의 전압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한다.
- (3) 절연대는 도료의 누설, 절연대의 오염, 그 밖에 절연성능의 열화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.

#### E - 87 - 2011

- (4) 도료 충전 시에는 도료탱크의 대전전하를 방전시키기 위한 접지봉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5) 고압자동 방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.
- (6) 취급 시 주의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.
- (7) 절연대 주변에는 안전방책을 설치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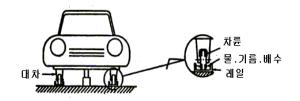
#### 4.5.7 압축공기 공급장치

- (1) 액체정전도장기의 압축공기 공급장치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.
  - (가) 모든 관련기기의 접지가 쉽도록 접지단자를 부착한다.
  - (나) 충분한 용량의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한다.
  - (다) 청정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터 및 드레인 배출장치를 설치한다.
  - (라) 건조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기건조기를 설치한다.
  - (마) 회전분무형 도장기의 에어모터에 공급되는 압축공기는 결로(結露)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열원을 가진 건조기를 경유하는 구조로 한다. 다만, 결로방지용으로 전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상 가열 시에 열원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춘다.
  - (바) 배관, 호스 등은 인장응력이나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.
- (2) 분체정전도장기의 압력공기 공급장치는 상기 (1)의 (가)부터 (라)까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#### 4.5.8 피도장물의 운반장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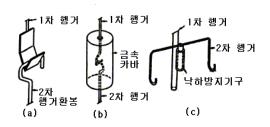
- (1) 컨베이어 운반장치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.
  - (가) 컨베이어 체인은 확실하게 접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.
  - (나) 바퀴를 부착한 대차가 <그림 9>와 같이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방식의 컨베이어는 피도장물을 확실히 접지시키고, 레일 내부에 물 또는 기름이 배수되는 구조로 한다.

- (다) 피도장물의 접지는 그 상태를 검출하여 불량한 경우에는 경보를 발하거나 컨 베이어의 운행을 정지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.
- (라) 이상 시에는 자동적으로 컨베이어의 운행을 정지시키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.
- (마) 정전 등으로 컨베이어가 정지된 후 자동복귀 되는 것이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, 재통전 시에 자동 복귀되지 않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.
- (바) 폭발위험장소의 전기기기는 해당 장소에 적합한 방폭구조로 한다.



<그림 9> 주행대차의 접지

- (2) 천장 컨베이어용 행거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.
- (가)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되, 컨베이어를 통하여 접지되는 구조로 한다.
- (나) 컨베이어 체인이 쉽게 오염되지 않도록 행거는 충분한 길이로 제작한다.
- (다) <그림 10>과 같이 1차 행거와 2차 행거의 접속부가 오염되지 않는 접속방법을 사용한다.
- (라) 피도장물과 컨베이어 레일간의 전기저항은1 MΩ 이하로 유지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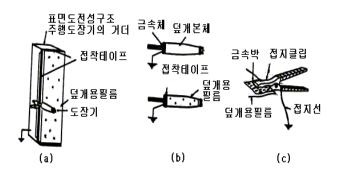
<그림 10> 행거 접속부의 예

- (3) 자동 및 반자동 회전장치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.
- (가) 피도장물 회전 시 흔들림이 적은 구조로 한다.
- (나) 피도장물 회전 시에 행거의 꼬임으로 피도장물의 낙하 등이 발생되지 않는 구 조로 한다.

E - 87 - 2011

## 5. 도장부스

- (1) 도장부스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.
- (가) 도장부스의 크기 및 형상은 피도장물의 크기와 형상에 따라 결정하고, 벽면과 도장기 사이는 상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.
- (나) 국소배기장치는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치 이상의 적합한 성능으로 한다.
- (다) 도장부스 벽면에 사용되는 재료는 가능한 한 금속 또는 도전성의 것으로 접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.
- (라) 도장부스의 창 등은 금속망입 유리를 사용하고 창틀은 금속제로서 접지 가능한 구조로 한다.
- (마) 대전방지 처리된 필름으로 벽면을 피복하는 경우에는 <그림 11>과 같이 필름을 접지시키는 구조로 한다.



<그림 11> 필름 접지방법의 예

- (바) 폭발위험장소에 설치하는 전기기기는 해당 장소에 적합한 방폭구조로 한다.
- (사) 배풍기의 풍량 조절용 댐퍼는 스토퍼를 설치하여 닥트가 완전히 밀폐되지 않 도록 한다.
- (아) 도장부스 내부 기류방향은 도장장치, 부스 벽, 부스천장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.
- (자) 작업자가 입실하여 도장하는 부스는 도료 분무 시 작업자에게 도료 미스트가 폭로되지 않도록 한다.
- (차) 배풍기 고장 시에는 관련된 도장설비의 가동이 중지되도록 가능하면 연동장치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.

#### E - 87 - 2011

- (카) 도장부스는 도료 분무 시 분무도료가 외부로 누설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.
- (타) 무인 자동도장용 부스는 출입구에 작업자 등의 입실여부를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파) 배기닥트는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고 접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.
- (하) 급·배기닥트에는 점검구를 설치한다.
- (거) 부스주변의 배기닥트에는 화염전달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 댐퍼의 설치가 권 장된다.
- (너) 도장부스의 급기는 온도 및 습도를 제어하는 기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더) 배기의 처리는 안전보건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분체도장 설비에 있어서 도료회수 장치의 설치로 동등 이상의 제진효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(러) 도장부스 또는 도장부스와 자동도장기가 이동하여 대형 피도장물을 도장하는 특수한 설비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 - ① 도료, 압력공기 및 각 공급계통의 대전방지를 위한 접지회로가 상시 확실 히 접지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폭발위험장소 설정을 고려한다.
  - ② 설비의 이동 중에도 배기를 할 수 있는 배기장치를 갖춘다.
- (머) 도장부스 벽면·천장·바닥의 재료는 불연성 재료로 한다.
- (2) 도장실 벽면재료로 절연플라스틱 등의 절연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대전된 벽면으로부터 접지시스템에 방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로 하여야 한다.
- (가) 벽체와 금속제의 골조, 기기 등에 직접 접촉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.
- (나) 금속제 골조, 기기 등을 벽체에 부착할 경우에는 절연재를 사용하여 벽체와 50 mm 이상 이격시킨다.
- (다) 금속제 골조가 벽면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다른 접지극을 가진 금속구조물이 접근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.

#### 6. 표시

(1) 정전도장작업 중에는 "정전도장 중"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.

E - 87 - 2011

- (2) 고전압위험 표시 등은 제어반, 도장부스 출입구의 확인이 쉬운 장소에 부착되어 야 한다.
- (3) 각종 연동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상(Abnormal) 표시등이 설치되어야 한다.

## 7. 액체나 분체정전도장기의 소화설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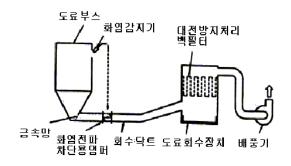
- (1) 도장부스에는 자동소화설비 또는 이동형 수동소화기를 구비하여야 하고, 부스 내에 배치하는 소화기는 접지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(2) 대형도장부스에는 자동화재탐지기와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3) 소화설비는 가스소화설비, 분말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를 설치하되, 길이가 긴 도장부스 등에는 연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할 수도 있다.
- (4) 기기류는 필요시 비상정지 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.
- (5) 노출 충전부는 작업자가 직접 접촉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.

#### 8. 본체도료회수 장치

- (1) 각 기기의 모든 금속부는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(2) 도료회수용 집진장치(Back filter)의 천은 대전방지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3) 배기닥트는 금속 또는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고 접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되, 유연 성 호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속이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고 절연성 재료의 경 우에는 호스 내에 접지선이 들어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.

E - 87 - 2011

- (4) 도료부스와 도료회수 탱크 사이에는 <그림 12>와 같이 화염전파 차단용 댐퍼를 설치하고 도장부스 내에 부착된 화염검출장치와 연동되도록 한다.
- (5) 배기상태 검출용 차압측정장치를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.
- (6) 도료회수 장치에는 폭발 방산구를 설치한다. 다만, 개구부가 외부로 접속되어 있는 경우(부스와 회수장치가 일체형이 아닌 장치)에는 예외로 한다.



<그림 12> 화염전파 차단용 댐퍼의 설치 예

## 9. 전기설비

- (1) 도장부스 내에 설치되는 전기기기는 해당 장소에 적합한 방폭구조로 한다.
- (2) 분체도장부스 밖에 설치되는 배풍기용 전동기는 방진구조로 하고, 용제증기가 체 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전기기기는 해당 장소에 적합한 방폭구조로 한다.

## 10. 로봇 및 제어반

- 10.1 로봇에 대한 안전사항
  - (1) 모든 기기의 금속부분은 접지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.

#### E - 87 - 2011

- (2) 플라스틱제 외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전방지처리가 된 반도전성의 것을 사용하고 이를 접지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.
- (3) 로봇에 부속된 전동기·제한스위치·전자밸브·전기접속부 등은 해당 장소에 적합한 방폭구조로 한다.
- (4) 케이블, 도료배관, 공기호스 등은 로봇이 이동할 때 급격한 굴곡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.
- (5) 정비작업 시 작업자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가동부에는 기계적 또는 전기적 인 안전장치를 설치한다.
- (6) 도장기와 피도장물이 오작동에 따라 충돌할 우려가 있는 시스템에는 이상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.
- (7) 통상의 도장작업 시에 로봇의 각 부분이 분리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.
- (8) 로봇을 사용하는 경우, 안전보건규칙 제222조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.

#### 10.2 제어반

- (1) 본체는 방진구조로 한다.
- (2) 도장기의 도료분무를 제어하기 위하여 고전압·도료·주행도장장치·로봇의 작동을 표시하는 기능을 갖춘다.

## 11. 자동정전도장기의 연동

- (1) 자동정전도장기에는 다음의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가) 주행도장장치의 운전이 정지된 경우, 고전압회로가 차단되는 방식이어야 한다.

E - 87 - 2011

- (나) 도장 및 세정을 수작업으로도 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는 '도장' 및 '세정'기능 절환스위치를 설치하고, 스위치를 "세정"위치로 전환하는 경우 고전압이 차단 되는 방식으로 한다.
- (다) 그 밖에 도장기의 연동장치는 다음 <표 1>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.

<표 1> 자동정전도장기의 연동장치

제어대책 항목			고전압	도료 분사	도장용 공기	컨베이어 장치 등	급배기	자동소 화설비
자동기계	통상 조작	주행도장장치 등	0	0	_			
		세정・색체 조작	0	0	_			
	이상 조건	과전류 검출	0	0	0	0	0	
		주행도장장치 등 의 과부하	0	0	0	0	0	
		도료펌프 이상	0	0	_	_	_	
		공기압 저하	0	0	0	_	_	
		제어이상	0	0	0	0	0	
관련장치		컨베이어 정지	0	0				
		급배기장치 정지	0	0	0	0		
		화재감지	0	0	0	0	0	×

- (주) 1) : 해당항목의 작동 정지신호
  - 2) × : 해당항목의 작동 신호
  - 3) <표 1> 이외에 도장기 부근의 화염검출장치, 자동도장기의 출입 감시장치, 피도장물 접지불량 검출장치 등을 추가할 수 있다.

## 12. 수동정전도장기의 연동

- (1) 조작스위치를 기동위치로 선택하는 경우에만 고전압이 인가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.
- (2) 과전류 검출장치가 작동 시에는 고전압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춘다.

## 제 3 장 정전도장기의 설치

## 13. 기기류의 접지

- (1) 정전도장기는 다음과 같이 접지하여야 한다.
  - (가) 접지선은 단면적이 2 mm 이상인 동선을 사용하여 접지저항이 100 Ω이하가 되 도록 하고 피뢰침용 접지와는 공용으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(나) 도장실내 도전성 물체는 고전압 인가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접지한다.
  - (다) 접지선과 피접지체와의 접속은 납땜·용접·압착단자·볼트·너트 등의 접속금구를 사용하여 접속한다.
  - (라) 방전 시 큰 전류가 흐르는 고전압 접지스위치의 접지는 반도체 등 다른 전자 기기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굵고 짧은 전선(단면적이 5.5 m² 이상이고 길이가 2 m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)으로 접지된 부스벽체와 건물 금속체 등에 접속한다.
- (2) 도료의 종별에 의한 접지 여부의 결정은 다음에 따른다.
  - (가) 비도전성 도료의 경우에는 도료 공급장치·도료밸브·도료압력 조절기·도료탱크· 색절환장치 등의 도료계통의 모든 기기는 접지시킨다.
  - (나) 금속성 도료, 수용성 도료 등 도전성 도료의 사용으로 도료경로를 절연하여야 하는 경우, 도장 중에는 도장기에서 부터 도료탱크에 이르는 도료계통에 고전 압이 인가되므로 도료절연대의 지지대와 방책을 접지시키고, 색절환 시나 도료 보급 중에는 도료절연대 위의 탱크를 접지시킨다.

E - 87 - 2011

## 14. 도장기 오염방지 덮개

- (1) 도장기 본체의 오염방지용 덮개에는 절연성 플라스틱 필름이 부착되어서는 아니 된다.
- (2) 도전성이 있는 필름형 덮개를 부착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.
  - (가) 필름은 대전방지 처리된 도전성의 것을 사용한다.
  - (나) 덮개는 내부에 유기용제 증기 또는 분체가 체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능 하면 피물체에 밀착시켜 설치한 후 접지시킨다.
  - (다) 덮개는 표면에 부착도료에 의한 도막(塗膜)이 형성될 경우, 도전성이 저하되므로 수시로 교체한다.

## 15. 오염방지 덮개의 접지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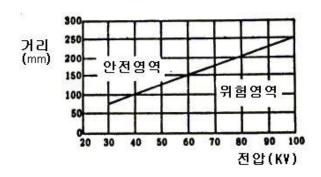
- (1) 덮개용 필름을 접지된 도전성 재료의 표면(20 cm² 이상)과 밀착시키고, 도전성 접지테이프 등으로 고정시킨다.
- (2) 덮개용 필름 일부분을 양면 금속박(약 20 cm²)과 접지선이 부착된 접지용 크립 등으로 견고히 고정한다.

## 16. 고전압 인가부와 접지시스템의 안전거리

- (1) 고전압 인가부와 접지시스템 간에 유지해야 할 최소안전거리는 전압 10 kV마다 25 mm 씩 가산한 <그림 13>의 직선과 같이 나타난다.
- (2) 안전거리의 유지는 다음의 고전압 인가부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.
  - (가) 회전분무형 도장기, 피도장물 및 접지시스템 사이
  - (나) 절연대상의 도료탱크, 기타 기기 및 접지시스템 사이

E - 87 - 2011

(3) 상기 (1)에서의 최소안전거리는 고저항을 구비하여 피도장물에 접근 시 자동으로 전압이 낮아지는 건형 도장장치 또는 고전압 인가부가 절연물로 피복된 고압 케 이블, 도료부스 등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



<그림 13> 전압과 안전거리 관계

## 17. 고정식 고전압 발생장치의 설치

액체 또는 분체정전도장기의 고정식 고전압 발생장치는 도장부스 밖에 설치하여야한다.

## 18. 펌프 등의 설치

- (1) 비도전성 도료를 이송하는 펌프는 확실하게 접지하여야 한다.
- (2) 금속성 도료, 수용성 도료 등의 도전성 도료의 사용으로 도전경로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펌프를 고전압 인가부로 간주하여 접지시스템으로부터 절연시키고, 그 주변에 방책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금속제 방책의 경우에는 이를 접지하여야 한다.
- (3) 고정식 도료탱크, 용제탱크 등은 도장부스 밖에 설치되어야 한다.

E - 87 - 2011

## 19. 로봇 등의 설치

- (1) 자동주행장치, 로봇 등은 견고하게 부착시키고, 도장기와 주변 벽면 또는 물체와 의 거리가 적절히 유지되도록 하며, 모든 금속기기 및 외함 등을 확실하게 접지 시켜야 한다.
- (2) 로봇에는 그 주변 설비와 연동기능을 구비한 방책, 로봇 전용 도장부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
## 20. 제어반 등의 설치

- (1) 제어반은 도장부스 밖에 설치한다.
- (2) 제어반, 고정식 고전압 발생장치 등은 직사광선·진동·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고 접지시켜야 한다.

## 21. 부스 등의 설치

- (1) 부스 본체, 벽면, 천장 등은 확실하게 접지시켜야 한다.
- (2) 배기닥트는 분무 시 도료, 분체가 퇴적되지 않는 구조이고, 또한 부스와 전기적으로 연결된 구조이어야 한다.
- (3) 액체 정전도장설비의 부스 배기구는 지붕으로부터 1.5 m 이상 돌출시켜야 한다. 다만, 공기청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## 22. 전기공사

E - 87 - 2011

- (1) 도장기 관련 전기설비의 전기공사는 KOSHA GUIDE E-85-2011 "전기설비 설치 상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"에 따른다.
- (2) 고전압 케이블을 실외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절연내력을 가진 관통부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이 손상되거나 그 밖의 물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3) 교류 전원회로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.

## 23. 폭발위험장소의 설정 및 방폭전기기기의 설치

- (1) 정전도장기에 관한 폭발위험장소의 설정은 KOSHA GUIDE E-47-2010 "가스폭발 위험장소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" 및 KOSHA GUIDE E-99-2011 "분진 폭발위험장소 설정에 관한 기술지침"에 따른다.
- (2) 정전도장기에 관한 방폭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는 KOSHA GUIDE E-48-2010 "가스폭발분위기에서의 전기설비 설계,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" 및 KOSHA GUIDE E-117-2011 "분진 폭발위험장소에서의 전기설비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"과 KOSHA GUIDE E-120-2011 "분진 폭발위험장소에서의 전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"에 따른다.